남북 문화·예술 교류 - 접점과 평행선

/ 통일원, 정치학 박사

북한의 문화예술관과 정책 방향을 실증적으로 살펴 보자. 이를 위해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관련 내용에 대한 사례연구가 적절할 듯하다.

남북 고위급회담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90년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래 모두 8차례 진행되었다. 남북관계의 기본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제5차 서울회담(91. 12)에서 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제6차 평양회담(92. 2)을 통해 발효되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 부문이 여기서 기초적인 분석 대상 중의 하나가 된다. 남북은 이 부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협의 기구로서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4차례에 걸친 회의와 접촉을 가졌다. 그러다가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92. 9, 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이같은 남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이 어떻게 직·간접으로 투영되었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문예정책 방향을 구조적으로 알게 해 줌은 물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입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

(1) 「남북기본합의서」 타결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남북기본합의서의 타결 과정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남측은 두가지 큰 흐름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통해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한다"와 "남과 북은 민족 전체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체신, 학술·교육, 문화·예술, 언론·출판, 종교, 보건, 환경, 체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북과 남은 과학, 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여 협력한다"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측은 그들 체제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서로 단합하고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건전하게 일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병폐들이 없다"(91. 12,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악취 풍기는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북측이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출판물 교류를 반대하는 뜻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남북 사이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출판물 등이 상호 교류될 경우, 남측의 문화 바람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지역으로 유입될 것이 뻔하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심적·사상적인 동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동안 폐쇄체제로 일관해온 북측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측은 언론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외면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92. 4) 제67조에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언론의 자유'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이같은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그것과 사뭇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언론자유는 남북 언론의 개방문제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닫혀 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남측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출판물을 개방하여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알게 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주장해 왔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의 단절 때문에 남북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이 날로 커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론 매체의 개방은 그를 해소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효율성있는 요소라고 할 만 하다.

그러나 북측은 합당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남측의 주장을 고려, 상호교류·협력에는 동의"하겠다면서도, 언론인 교류 문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명분은 "언론인 교류문제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측은 대내적으로 파문이 클 언론 개방이나 언론인 교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언론 교류·협력문제는 마지 못해 "남측 주장에 동의"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종교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는 북측이 다른 어떤 부문보다 강력히 반대하는 분야이다. 이는 북측이 종교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피면 자연스럽게 알게된다.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 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헌법 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종교를 외세 개입의 매개체로서, 체제 동요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종교 인식으로 볼 때, 북한이 종교와 종교인의 교류를 주장하는 우리측 제의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남북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문화·예술분야 관련 조항인 제16조를 탄생시켰다. 내용은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이다. 형식상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다음에 다룰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 조항은 비록 가장 중시되어야 할 대상 중의 하나인 생활문화분야(의상, 음식, 건축 등)와 전통문화분야(민족, 고고학, 문화재 등)이 빠져있고, 종교분야 역시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21조를 통해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라고 합의한 점도 성과이다.

요약하면 북측은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세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북측이 교류·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야는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 전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대외로 공동진출하는 문제 등 두가지이다. 또한 비교적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는 분야는 상호 예술단의 교환(명칭·시기는 불명확), 체육분야의 교류·협력 등으로 역시 두가지이다.

둘째 북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세가지이다. 언론보도매체의 개방과 교류, 저작권 보호, 자료교환실(명칭은 보류) 설치가 그것이다.

셋째 북측이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분야는 두가지이다. 종교·종교인의 교류와 언론·언론인 교류는 지금까지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부문이다.

(2)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타결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설치된 기구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이다. 또 이 기구에서 합의, 산출된 결과물이 남북교

류·협력 부속합의서이다.

이의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3조이다. 내용은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92년 3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의 7회, 위원장 접촉 1회, 위원 접촉 6회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이처럼 여러 차례 진행된 회의와 접촉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 9)에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 및 제21조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은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제9조(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제11조(국제무대에서 사회문화분야의 상호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 제12조(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지원보장), 제13조(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의 공동위에서 협의·해결), 제14조(사회문화부문의 이행·실천은 공동위에서 결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 규정하였던 '과학·기술'과 '환경'분야는 그 성격상 경제분야에 포함되므로, 이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으로 이관시켰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남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맞도록 이 부속합의서에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류·협력의 실천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남측은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9조와 관련하여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 등을 통한 학생, 교직원, 작가,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사회문화분야의 관련 인원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자 주장(제1차 분과위, 92. 3. 18), 교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북측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으로 자기측이 지정하는 교류 대상을 한정토록 요구하였다. 즉 "여러 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면서 교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데 반대하였다. 특히 '언론인', '종교인'의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임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남북 공동기념일과 민족 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북측은 '예술단' 표현과 예술단 교환의 시기 등을 명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으로 표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난날 광복절 경축과 송년기념 행사때 북측이 예술단 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지난 85년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의 일이다. 남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어 이산가족들간의 자유로운 상봉과 왕래가 실현

되기 이전에라도 시범사업으로 고향방문단을 상호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광복 40주년을 경축하며 또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고향방문단과 함께 예술단 교환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사이에 예술단 교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북한측은 89년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성사하려는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혁명가극인 <꽃파는 처녀>를 공연하기 위한 예술단을 교환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북측은 '평양 범민족 통일음악회'(90. 10, 평양)와 '90 송년 통일 전통음악회' (90. 12, 서울)에 남북 음악인들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공연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측은 정작 민족 공동기념일과 명절 때에 문화예술단의 교환을 명시하자는 남측 제의를 놓고 주저하였다. 이는 북한예술단이 서울 공연을 마친 결과 평양 당국자들이 기대치 이하의 평가를 내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효험을 보지 못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이와 함께 체육경기대회의 공동개최와 국제경기대회의 단일팀 참가문제를 명시하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서도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측은 84년 제23회 LA올림픽대회와 90년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미 남북 사이에는 남북통일축구대회의 서울·평양 교환 개최(90. 10)에 이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91. 4, 일본)와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91. 6, 포르투갈)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류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북 체육인간의 접촉과 교류는 연이어 북한선수들의 사상적 동요를 일으켰다. 91년 8월에는 북한의 유도선수가 우리측으로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측은 남북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북측은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상호 교환전시회를 개최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그들의 예술수준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민족문화유산, 특히 지역적 특성성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남북간 상호 교환전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작품과 문화유물 등의 교환전시회를 갖게 될 경우, 다른 문화·예술분야의 교류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인원만이 왕래하는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에도 위협요소로는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북한측이 판단할 만한 것이다.

다음은 저작권 문제이다. 남측은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9조 ⑤항과 관련하여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4차 분과위원회(92. 5. 30)에서 문화·예술의 각 분야를 명시는 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란 그들에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측은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1조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거나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그동안 제3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행사시의 공연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남북영화제(90. 10, 뉴욕)를 위시해서 남북코리아 서화전(91. 5, 북경), 환동해 국제예술제(91. 5, 일본), 남북통일 전통미용풍속제(91. 8, 사할린), 통일예술축제(92. 8, 사할린)에 남북이 공동으로 공연했던 사례들이 그러하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3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은 "남북사이에 사회문화분야의 원활한 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자료교환실을 설치·운영하자"는 제의(제1차 분과위원회, 92. 3. 18)를 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계속 회피하는 자세를 나타내다가 제7차 분과위원회 회의(92. 9. 3)에서야 남측 안을 수용,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를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측이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타결짓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예술정책은 그 이전 남북기본합의서를 마무리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북사이에 교류·협력문제에 자신감이 있는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 전시문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예술 및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호응을 해왔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나 자료실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언론인, 종교인의 상호 교류에 대해서도 역시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종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정책 관련 쌍방 주장 대비표>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비 고
보도매체 교류문제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통해 민족구성원들이 서로 상대방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 하는데 있어 가장 본질적 요소인 보도매체의 개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 사본주의 사회의 썩은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의 개방을 반대함 ○ 남측의 주장을 고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교류·협력에 동의함	△
종교·종교인 교류문제	○ 우리측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분야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종교인 등 사회문화분야 관련 인원간 상호교류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음	○ 북한측은 종교분야 및 종교인의 상호교류·협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음.	×
언론·언론인 교류문제	○ 우리측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언론·출판분야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언론인의 상호교류를 실시하여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음	○ 북한측은 언론분야는 출판분야와 같으므로 굳이 「언론」을 부속합의서에 명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언론인 교류문제는 민족 구성원 전체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체육분야 교류·협력 문제	○ 우리측은 각 종목별 친선경기 개최, 체육인들 상호교류,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북한측은 체육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 참가의 명시를 외면한 채 체육분야에서 기술협력, 접촉·교류, 공동행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예술단 교환문제	○ 우리측은 남북 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시하였음	○ 북한측은 「예술단」표현 및 「예술단」교환 시기를 명기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예술작품·문화유물의 교환 전시문제	○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자료와 경험을 상호교환하며, 각자가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물 및 예술작품의 교환전시를 실시하도록 함	○ 역사유물을 비롯한 민족유산을 발굴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문화유물 및 예술작품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함	○
저작권 보호문제	○ 우리측은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음	○ 북한측은 저작권 문제를 계속 기피하다가 문화·예술의 각 분야는 명시하지 않은 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자료교환실 설치문제	○ 우리측은 사회문화분야의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자료교환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였음	○ 북한측은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를 회피하다가 자료교환실 명칭은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공동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국제무대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문제	○ 문화·예술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국제행사 등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해외동포에게 민족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하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기구들에 공동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함	○

* 비교란의 표시는 북한측이 각 항에 대해 나타낸 입장의 정도를 나타낸 것임.
○ (적극적인 입장) △ (소극적인 입장) □ (비교적 적극적 입장) × (부정적 입장)